
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) 공고

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, 범죄 발생 우려,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아래의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 처리(폐차)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07월 03일

고령군수



1. 공고기간 : 2026. 07. 03. ~ 2026. 08. 03.
2. 강제처리대상 차량 : 45모8384외 13대(상세내역 : 붙임 참조)
3. 강제처리 예정일 : 2026. 08. 03. 이후
4. 강제처리(폐차)장소 : 동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
5.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6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
가. 상기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(폐차 또는 매각)됨은 물론 범칙금 100~150만원이 통고 처분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압류 및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.

※ 강제처리(폐차) 시 차량 내 모든 물품(비품)도 함께 처분되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(점유자)에게 있습니다.

☞ 기타 문의사항 경북 고령군청 지역경제과(☎ 054-950-659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